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회)	

예비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장 등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,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방부장관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예비군법」이 개정(법률 제21388호, 2026. 2. 27. 공포, 8. 28. 시행)됨에 따라,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,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(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운영) ①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
2.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처리 등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, 절차,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0조(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운영)</u> ① <u>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</u> <u>2.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처리 등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, 절차,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06